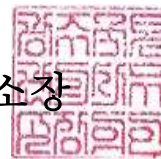


차량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

도로법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및 제117조(과태료)에 따른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)에 따라 과태료 독촉(가산금)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, 이사감,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,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3년 5월 22일

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



1. 건 명 :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
2. 근 거 : 「도로법」 제77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,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 참조
4. 공고기간 : 2023. 5. 22. ~ 2023. 6. 5.
5. 납부 안내

가. 납부 및 수납방법 : 납부 및 수납방법 :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,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에 상당하는 증가산금(최대 75%까지 가산금)이 부과되고, 국세징수법 제24조(압류)에 의거 재산(동산, 부동산, 금융자산, 유가증권 등) 압류하여 동법 제61조(공매)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 재산 매각 처분을 통해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(☎062-970-63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.